

# 국 토 교 통 부

## 시 정 요 구

제 목 국지도 〇〇-〇〇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완료구간 설계변경  
미이행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강원도(〇〇〇〇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비의 9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2. 12. 4.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〇〇로000번길 00에 있는 〇〇〇〇〇(주) (대표이사 〇〇〇)와 1개사<sup>134)</sup>와 ‘국지도00호선 〇〇-〇〇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32,109,141,559원으로 도급계약<sup>135)</sup>하고 2012. 12. 14. 착공하여 2017. 11. 17.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 5.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134) 〇〇도 〇〇〇시 〇〇읍 〇〇〇리 000-0 000호 〇〇〇〇〇〇(주) 대표자 〇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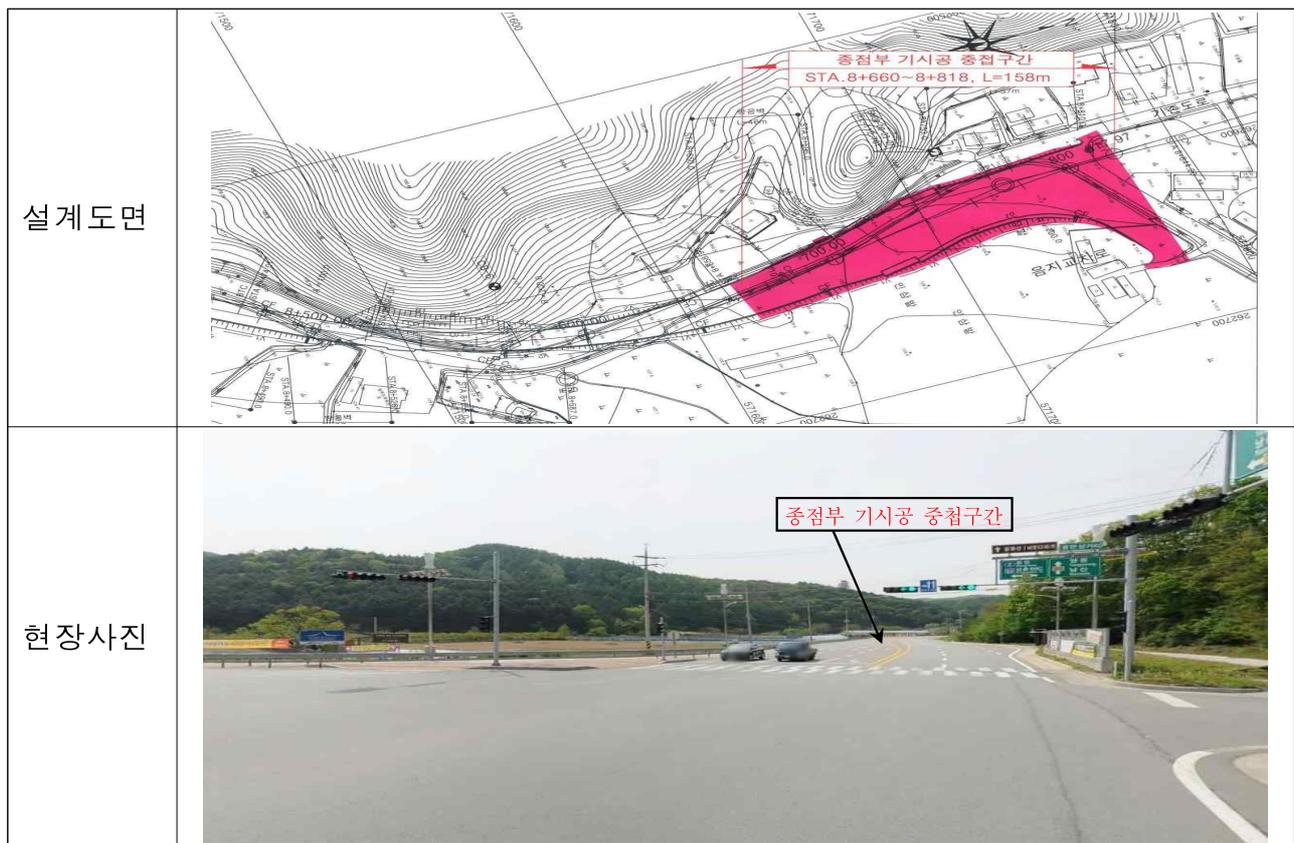
135) 2015. 12. 9. 총 공사부기금액 33,917,606,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강원도(○○○○과)에서는 위 ‘국지도00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158m를 2012. 9. 25. 준공한 ‘국지도 00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136’에 포함하여 시공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강원도(○○○○과)에서는 ‘국지도00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측점 8+660-8+818 158m는 2012. 9. 25. 준공된 ‘국지도00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되어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중복반영된 위 구간은 공사구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2016. 10. 7. 감사일 현재까지 제외하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 210,000,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표] “○○교차로 부근(L=158m) 설계도면 및 현장사진”



136) 강원도에서는 2007. 3. 22. ○○○도 ○○시 ○○길 0에 있는 ○○○○(주) (대표이사 ○○)와 ‘국지도00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46,348,461,000원에 도급계약하여 시행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국지도 00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이미 시공 완료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158m를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총사업비에서  
210,000,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